동작구의회공고 제2019-11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 (안 제명)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 ~ 제4조)

다. 미세먼지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조성)"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를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의무예치금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기예치기금"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방활동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예

방활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구”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구”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제6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사・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조사・연구”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관리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ㆍ3. (생 략)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회계법」 제38조---.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② (생 략)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발생한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무예치금액------------------------------.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 략)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	**제6조(기금의 용도)** ------------------------------. 1. (현행과 같음) 2. ------------------------- 예방활동 가. (현행과 같음)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구--

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 차. (생　략)	다.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 -----------시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구 ---------------- ---------------------------- --- 조치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6. ------------------------- ----- 조사·연구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출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8호 ---------------------------- ---------------------------- ----------------------------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 략)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범위-------------------------.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